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관】

현 행	개 정(안)
<p>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기타 이용자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 다만,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통지가 불가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p>	<p>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u>이용자의 불법행위가</u> ----- ----- <p>②----- <u>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u>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u>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 -----</p>